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의15 서식] <개정 2024. 2. 16.>

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

1.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(장비 기관분류별 설치장비 수/관리책임자 수, 대/명)

구분		설치기관	구비의무기관 설치장비 수																			그 밖의 기관 설치 장비 수
			계	공공보건의료기관	소방구급대구급차	의료기관운용구급차	여객항공기및공항	객차	총톤수 20톤이상선박	500세대이상공동주택	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	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리사무소·안내시설	다중이용시설									
관할구역	계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		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/				/

2.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

○ 의사:

○ 간호사:

○ 응급구조사:

○ 간호조무사:

○ 기타:

3. 응급장비 사용 건수:

○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해야 합니다.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